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93
----------	------

2020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안광석 의원
- 나. 발의일자 : 2020년 5월 21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 라. 상정결과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광석 의원)

가. 제안이유

- 건전한 관람문화를 저해하고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용제한 대상자를 ‘술에 취한 자’에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로 범위를 확장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술에 취한 자’를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함(안 제6조제1호)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서울시 정무부시장 방침에 의해 수립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에 의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20.4.2.) 사항으로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중 동 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개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광석 의원(강북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였음.
-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과 2017년 2차례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한 ‘인권도시 정책’을 추진하였음.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시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영향평가 수행과정을 통해 행정내부 인권에 대한 지식·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2019년 4월 “인권영향평가¹⁾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 자치법규, ②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시설물 및 단위사업 등, ③ 그 밖에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인권영향 평가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하였음.

- 2020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제도 결과로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하기와 같이 9개 분야에서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I. 차별 및 인권침해	II.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III. 시민참여보장
개선점	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참여(참정)권, 평등권
인권침해 (제한분야)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면제)의 올바른 적용여부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여부)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협조 공문을 각 실국에 배포한 바, 동 조례의

1)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경우 제6조의 조문이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분야에 포함된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통일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 동 개정안의 취지는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과 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한대로 시민청의 건전한 관람문화를 저해하고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용제한 대상자를 ‘술에 취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로 범위를 확장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데에 있음.

이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이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 의미가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으로 시민청의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에 제한하여

실제로 시민청의 이용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의 수정제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제 안
제6조(이용의 금지) (생략)	제6조(이용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의 금지) (개정안과 같음)
1. 술에 취한 자	1. 다른 사람의 <u>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u>	1. ----- <u>이용</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2. ~ 3. (개정안과 같음)

- 시청 시민청은 2013년 1월 12일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 4월 28일 삼각산 시민청이 개관하여 현재는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은 2019년 6월 시민들의 소통·문화 창구 확장을 도모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시민청 설립을 계획하고 삼각산 시민청의 확충과 더불어 성북, 송파, 금천, 강서를 후보지로 총 4개의 시민청을 추가 건립·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

2020년 시민소통기획관은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시민청 확산 부지 타당성 용역’으로 편성하였고, 5월 29일 서울연구원과 6개월의 기간으로 용역 계약을 완료²⁾하였음.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연구의 성과에 따라 본격적인 권역별 시민청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청 시민청 및 삼각산 시민청이 운영 중단 중에 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5일부터 대관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임.

2) ‘권역별 시민청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용역수행:서울연구원, 계약금액 : 1억 8백만원, 용역기간 : 5.29~11.24(6개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 중 ‘관람’은 그 사전적 의미가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으로 시민청의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에 제한하여 실제로 시민청의 이용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으로 변경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6조제1호의 시민청 이용을 금지하는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를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자로 수정함(안 제6조제1호)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93
----------	---------

제안년월일 : 2020년 6월 1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 중 ‘관람’은 그 사전적 의미가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으로 시민청의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에 제한하여 실제로 시민청의 이용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으로 변경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6조제1호의 시민청 이용을 금지하는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를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자로 수정함(안 제6조제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호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이용의 금지) (생 략) 1. <u>술에 취한 자</u> 2. ~ 3. (생 략)	제6조(이용의 금지) (헌행과 같음) 1. <u>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 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u> 2. ~ 3. (헌행과 같음)	제6조(이용의 금지) (개정안과 같음) 1. ----- 이용 ----- ----- ----- 2. ~ 3.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술에 취한 자”를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의 금지) (생 략) 1. <u>술에 취한 자</u> 2. ~ 3. (생 략)	제6조(이용의 금지) (현행과 같음) 1. <u>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u> 2. ~ 3. (현행과 같음)